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211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신항로지텍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2315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12.
판 결 선 고	2016. 1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0. 15.에 한 2012년 재산세 3,659,480원, 지역자원시설세 34,600원, 지방교육세 723,620원, 2013년 재산세 3,601,020원, 지역자원시설세 34,370원, 지방교육세 712,190원의, 2013. 10. 16.에 한 취득세 390,955,480원, 지방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육세 20,729,490원, 농어촌특별세 27,925,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을 제8호증의 1, 2,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손지호

판사 박준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판사 문상배